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 定款

(1971年 4月17日 制定)

(1974年 6月12日 改正)

(1977年 5月26日 改正)

(1978年 6月 9日 改正)

(1979年 5月30日 改正)

(1981年 5月26日 改正)

(1983年 6月11日 改正)

(1987年11月12日 改正)

(1989年 5月10日 改正)

(1991年 5月30日 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建築에 관한 學術·藝術·技術을 研究 研磨하고 建築人의 地位向上과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으로써 建築文化暢達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本部住所地) 本會는 本部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 4 條 (支部設置) 本會는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本會所在地 以外에 必要한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5 條 (事業) 本會는 第 2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建築에 관한 調査·研究指導 및 이에 관련된 事業
2. 會誌, 論文集, 研究報告書 其他 建築에 관한 圖書의 刊行
3. 建築에 관한 講習會·講演會·懇談會·展覽會·見學會 등의 開催
4. 建築에 관한 計劃·監督 및 技術檢討에 대한 國家 公共機關 其他 依賴에 관한 事項
5. 國內外 관계 諸學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員 및 會費

第 6 條 本會員은 다음과 같이 4種으로 한다.

1. 正 會 員
2. 準 會 員

3. 名譽會員

4. 特別會員

第7條(會員資格) 各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正會員: 正會員은 다음의 資格 中 하나를 具備하고 正會員 2人 以上の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 (1) 正規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한 者
 - (2) 專門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하고 建築分野實務經驗 2年 以上인 者
 - (3) 準會員으로서 2年 以上 建築實務에 從事한 者
2. 準會員: 準會員은 다음의 資格 中 하나를 具備하고 正會員 2人 以上の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 (1) 專門大學(2年制)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한 者
 - (2) 正規大學의 建築系統學科를 2年 以上 修了한 者
3. 名譽會員: 建築系統 및 이에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과 德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内外國人 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權利를 가지며 入會金 및 會費를 免除 받는다.
4. 特別會員: 建築에 관계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者 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選定된 者

第8條(會費) 1.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一但 納付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2. 本會 創設當時부터 正會員으로서 滿65세에 달한 會員 및 35年 以上 會費를 納付한 會員은 이후 會費를 免除한다.
3. 本會의 會費는 다음과 같다.

入會金

正會員 會費

準會員 會費

特別會員 會費

終身會費

第9條(除名)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第10條(資格停止 및 喪失) 本會의 會費를 2年 以上 納付하지 않은 者는 會員資格

이 停止된다. 會員停止 發效日 以後 滿2年內에 滯納會費의 納付로 會員資格이 復歸된다.

但, 資格停止 發效日 以後 2年이 經過한 者는 自動的으로 除名된다.

第11條 本會 會員 中 本會를 脫會코자 하는 者는 會員辭退書를 本會 事務局 에 提出함으로 脫會된다. 또한 本人死亡도 脫會로 看做된다.

第3章 任員 職員 및 部署

第12條 1. (任員의 定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1) 會 長 1名
- (2) 副 會 長 4名
- (3) 理 事 33名(會長, 副會長 包含)
- (4) 參與理事 약간名
- (5) 監 事 2名

2. (任員의 性格) 各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3. (會長の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4. (副會長の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 中 年齡 順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5. (理事 및 參與理事의 職務) 理事 및 參與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主要會務의 議決에 參加한다.

6. (監事の 職務) 監事は 會計事務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7. (任員의 選定)

(1) 會長, 副會長, 參與理事 및 監事は 任員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으로 推戴한다.

(2) 理事는 會長이 選任하여 總會의 一括認准을 받는다.

但, 理事의 반수(15명)씩은 隔年으로 選任한다.

(3) 任員選出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名譽會長 參與理事 支部長으로 構成하고 그 運營과 任員選出에 關한 規程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8. (會長 및 副會長の 任期) 會長·副會長の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2年 總會에서 認准하는 副會長 4名 中 2名の 任期는 1年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9. (參與理事, 理事 및 監事の 任期) 參與理事의 任期는 終身, 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며 3回 以上 連任하지 아니한다. 欠員으로 補選된 理事의 任期는 먼저 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10.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第13條 1. (名譽會長推戴) 前 會長 中에서 功績이 顯著한 分을 總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2. (參與理事推戴) 本會 前任 任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分을 總會決議로서 參與理事로 推戴한다.

3. 名譽會長은 모두 會議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14條 (部署)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두되 擔當理事를 會長이 委囑한다.

1. 總務部 : 本會의 一般事務에 관한 事項, 事務經理에 관한 事項, 支部監督에 관한 事項 기타 他部에 속하지 않는 事項

2. 研究部 : 學術 技藝의 研究 調査에 관한 事項

3. 事業部 : 啓蒙 宣傳 刊行 目的에 따른 諸事業에 관한 事項

第15條 (事務局) 本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內에 有給職員 約千名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로 會長이 任命한다. 職員은 會長, 副會長, 各 擔當理事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第4章 會 議

第16條 (會議의 種類) 本會 會議는 다음과 같은 2種으로 한다.

1. 總 會

2. 理 事 會

第17條 (總會) 總會는 定期, 臨時의 2種으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되 7日以前에 그 會議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이를 通知한다.

第18條 (總會의 成立) 總會는 在籍會員 正會員의 1/10이상 出席으로 成立한다.

第19條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4月中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다음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1) 理事會 決議로서 要求할 때

(2) 會員 1/20이상의 連署로서 要求할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臨時總會를 要求할 때는 理由를 書面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但, 臨時總會 召集要求를 接受하였을 때는 그 接受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을 얻은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의 認准
2. 事業計劃
3. 豫算 및 決算
4. 定款의 改廢 및 變更
5. 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
6. 기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1條 (總會의 議題)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다음 事項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前年度 收支決算 및 次年度 收支豫算
2. 前年度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3. 事業의 實績 및 計劃
5. 本會의 債權 및 債務

제22條 (總會議事) 總會의 議事は 出席 正會員의 多數決로써 이를 決定하되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제23條 (理事會成立과 議決)

1. 理事會는 理事 參與理事로서 構成하며 年6回 以上 會長이 召集하고 在籍理事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한다.
2. 臨時理事會는 다음의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가. 在籍理事는 1/5 以上の 連署로서 要求할 때
나.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議決은 理事會에 參席한 理事 및 參與理事의 過半數로 決定한다.

第24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諸規程의 制定 및 開廢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의 決定 및 變更에 관한 事項
3. 會員의 除名 懲戒 및 權利行使의 停止에 관한 事項
4.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諸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5. 褒賞者 決定에 관한 事項
6.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7. 기타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重要事項
8. (議事錄)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이 作成하고 出席理事가 署名捺印한 다음 事務局에 保管한다.
9. 總會 및 理事會 開催結果는 2週日 內에 會議錄 寫本 添附하여 建設部長 官에게 報告한다.

第5章 資産 및 會計

第25條(資産의 構成) 本會의 資産은 다음 項目으로써 構成된다.

1.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2. 贊助金과 贊助한 物件
3. 會館空地 및 建物
4. 資産에서 생긴 收益
5. 기타의 收入

第26條 1. (基本資産) 本會에 基本資産을 둔다.

- (1) 基本資産으로 指定 寄附된 贊助金 및 物件
- (2) 總會에서 基本資産으로 編入을 決議한 財産
2. (基本資産의 造成) 基本資産을 造成하기 위하여 毎年度 決算移越金の 1割 以上을 積立할 수 있다.

第27條(通常資産) 基本資産 以外の 資産은 通常資産으로 한다.

第28條(經費) 本會의 經費는 通常資産으로써 充當한다.

第29條(資産의 管理) 基本資産의 管理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하고 本會의 모든 資産은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第30條(特別會計) 必要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다.

第31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毎年 4月1일부터 翌年 3月31일까지로 한다.

第6章 支部 및 地方幹事

第32條(支部의 構成) 1. 支部는 該當 市道 및 外國에 設置할 수 있다.

2. 支部構成은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正會員 10名 以上으로 한다.

第33條(支部任員) 支部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支 部 長 1名
2. 支部評議員 若干名
3. 支部 幹事 1名
4. 支部 監事 1名

第34條(支部任員의 選出) 支部의 任員은 支部規約에 따라 選出하고 支部長 및 支部幹事は 支部의 推薦을 거쳐 會長이 認准한다.

第35條(支部長의 義務) 1. 支部長은 毎年 3월에 任員名單 會員名單 前年度의 會計報告書와 監事報告를 本會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2. 支部長은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本會長 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6條 (支部의 義務) 支部는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을 이행할 義務를 갖는다.

第37條 (支部規約) 支部規約은 支部가 作成하되 本會 理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8條 (支部運營) 支部運營은 支部에 所屬하는 通常資産으로 充當한다. 支部의 通常資産 中 本會에 納付하는 比率은 別도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39條 (支部總會의 參席) 支部總會時에는 本部에서 理事 1人 以上을 派遣하여 參席하기로 한다.

第40條 (地方幹事) 1. 支部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의 會員을 위하여 그 地域에 地方幹事を 둘 수 있다.

2. 地方幹事는 그 地域在住 正會員 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任命한다. 地方幹事の 任期는 本會任員과 같다.

3. 地方幹事は 毎年 3월에 所屬會員 名單을 本會 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하고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41條 (支部長 地方幹事の 權利) 支部長 및 地方幹事は 本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 7 章 定款變更과 解散

第42條 (定款變更) 本會 定款 中 第20條 4項은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2/3 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43條 (解散) 本會가 解散코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3/4 以上の 同意를 얻어 登録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44條 (資産의 處理)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資産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處理한다.

附 則

1. 本會 定款의 未詳한 것은 理事會의 決議로 規程을 정한다.
2. 第20條의 4,5項은 主務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舊定款下에 登録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은 本 定款이 發效되는 날 本定款下에 登録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4. 本 定款은 1971年 4月 17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4年 6月 1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7年 5月 26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8年 6月 9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9年 5月 30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1年 5月 26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3年 6月 11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7年 11月 1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9年 5月 10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이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날로 부터 效力을 發生한다.